

규정

시행 규칙 (EU) 2018/469

2018년 3월 21일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규정 (EU) 2015/2283에 따라 신규 식품
세 가지 허브 뿌리 (백수오, 속단, 참당귀) 추출물의 판매를 허가하고
시행 규칙 2017/2470을 개정함

별첨

시행규칙 (EU) 2017/2470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1) 다음 항목이 표 1 (인증된 노블푸드)에 알파벳 순서로 삽입됩니다:

인증된 노블 푸드	식품 사용 조건		추가적인 특정 표시 요구 사항	기타 요구 사항
'3가지 허브 뿌리 추출물 (백수오, 속단, 참당귀)	특정 식품 분류	최고 용량	해당 식이 보충제를 함유하는 식품은 '세 가지 뿌리 (백수오, 속단, 참당귀) 추출물' 로 표기되어야 한다. 해당 추출물을 함유한 식이 보충제는 셀러리 알레르기 보유자가 섭취해선 안된다는 표시를 이와 유사하게 표기해야 한다.'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2002/46/EC에서 정의한 식품보충제 (성인)	175 mg/day		